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0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정점식·고동진·서명옥

박충권 · 김정재 · 박덕흠

박준태 · 정희용 · 임이자

인요한 · 서천호 · 구자근

김장겸 • 유상범 의원

(14인)

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굴의 품질향상과 굴 및 굴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굴산업 종사자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굴의 품질향상, 굴과 굴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굴"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연체동물로서 굴과에 속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 2. "굴산업"이란 굴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 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굴가공품"이란 굴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 4. "굴산업 종사자"란 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굴산업 집적화 단지"이란 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굴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굴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 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3. 굴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 4. 굴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5.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7.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굴산업 전문기관 등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 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

- 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굴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 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굴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 2. 굴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굴산업 진흥의 지원

-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굴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 1. 우수한 굴과 굴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 2. 굴과 굴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 3. 굴과 굴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5. 그 밖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 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

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출 촉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 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국제화와 굴류 및 굴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굴산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2. 굴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 ·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3. 국제 굴산업 시장의 조사 · 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 4. 굴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 5. 그 밖에 굴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굴산업 종사자는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굴 및 굴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 2.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 3. 굴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
- 4. 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굴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굴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굴과 굴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굴과 굴가공품 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

- 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0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 굴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굴산업의 성장 여건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굴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 니할 것
 - ② 굴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 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③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신청·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굴산업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굴산업 진흥을 위하 여 기본계획에 따라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사업장을 둔 굴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 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굴산업 집적화 단지 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취소·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